

# 學校法人 信一學園 理事會 會議錄

(2022학년도 제3차)

회의소집통보일자	2022. 6. 20.		
이사정수	10	재적이사	8

1. 일 시 : 2022년 6월 28일(화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20 학교법인 신일학원 회의실

3. 출석이사(7명) :

이사장 이 상 균,  
이사 김 윤 희, 이사 박 병 대, 이사 박 영 국  
이사 이 세 웅, 이사 이 철 구, 이사 정 두 현  
(가나다순)

4. 출석감사(1명) : 김 학 신

5. 결석이사(1명) : 이 원 희

6. 결석감사(1명) : 최 문 규

7. 회의안건

- 1)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 선임의 건
- 2)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 선출의 건
- 3)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 4) 학교법인 신일학원 자산 취득 승인의 건
- 5) 신일중학교 신규교원 채용계획 승인의 건
- 6) 신일중학교 교원 과목변경 임용의 건
- 7) 신일고등학교 신규교원 채용계획 승인의 건
- 8)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사동 증축 착공(안) 승인의 건
- 9) 기타안건

8. 보고안건

- 1) 학교법인 신일학원 기본재산(토지) 일부 매각 결과 보고
- 2) 신일중학교 교원 면직 보고
- 3) 신일고등학교 장학금 신설 보고
- 4) 학교법인 신일학원 기부금 수령 예정 보고

정 두 현	이 철 구	이 세 웅	김 윤 희	이 상 균
			박 병 대	김 윤 희

## 9. 회의진행

이상균 이사장은 법인사무직원으로부터 재적이사 8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됨을 보고 받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서 박영국 이사의 기도가 있는 후 의장은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하다.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자회의록 낭독이 있는 후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 없이 한다.

## 10. 안건심의

이 사 장 : 제1호의안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법인의 이영춘, 서유석 이사가 2022년 6월 12일부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본인(이상균 이사)의 임기는 2022년 7월 27일까지임을 설명하다. 이어서 이영춘(개방, 교육경험 이사)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을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24일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이영춘, 이기호 후보의 이력과 경력 등을 설명하다.

이세웅 이사 : 두 분 모두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지만 이영춘 후보가 신일학원의 이사로 재임하면서 쌓은 경험과 법인과 학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고 다시 한번 이사로 재선임하자고 제의하다.

박영국 이사 : 이세웅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박병대 이사 : 박영국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장 : 박영국 이사의 동의와 박병대 이사의 재청이 있는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 이에 이사장은 이영춘 후보가 교육부승인일로부터 4년간 개방, 교육경험 이사로 중임되었음을 선포하다.

다음으로 서유석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을 논의할 것을 제의하다.

박병대 이사 : 서유석 이사는 풍부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과 학교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법인과 학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고 다시 한번 이사로 재선임하자고 제의하다.

이철구 이사 : 박병대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박영국 이사 : 이철구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장 : 이철구 이사의 동의와 박영국 이사의 재청이 있는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 이에 이사장은 서유석 후보가 교육부승인일로부터 4년간 교육경험 이사로 중임되었음을 선포하다.

다음으로 본인의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에 관한 안건임을 밝히고, 본인은 제척사유에 해당함으로 이 안건은 정두현 이사가 회의를 진행해 달라고 지명하고 회의실에서 퇴장하다.

정 두현	이철구	이세웅	박영국	김운희

정두현 이사 : 본 학원의 이사장인 이상균 이사의 임기가 2022년 7월 27일까지임을 알리고, 이상균 이사의 연임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하다.

박영국 이사 : 이상균 이사는 그 동안 법인과 학교를 위해 전심을 다하셨으며, 앞으로도 법인과 학교의 발전에 꼭 필요한 분이므로 연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다.

김윤희 이사 : 박영국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이철구 이사 : 김윤희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정두현 이사 : 김윤희 이사의 동의와 이철구 이사의 재청이 있은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 이에 정두현 이사는 이상균 이사가 2022년 7월 28일부터 2026년 7월 27일까지 4년간 이사로 연임되었음을 선포하다.

정두현 이사 : 다음으로 이상균 이사의 이사장 임기 또한 2022년 7월 27일 만료되는 바, 제2호의안인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것을 제의하다.

김윤희 이사 : 이상균 이사는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에 따른 위기 속에서도 빠른 대처와 강한 지도력으로 큰 피해 없이 법인과 학교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인과 학교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실 분이므로 연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다.

이철구 이사 : 김윤희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박병대 이사 : 이철구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정두현 이사 : 이철구 이사의 동의와 박병대 이사의 재청이 있은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 이에 정두현 이사는 이상균 이사가 2022년 7월 28일부터 2026년 7월 27일까지 4년간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으로 추대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상균 이사장이 재임장 하다.

이사장 : 제3호의안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 법인사무직원에게 상세설명을 요청하다.

법인사무직원 : 배포된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변경(자문기구 → 심의기구), 신일중·고등학교 사무조직 정원 편제 변경 등 붙임 1.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정두현	이철구	이세웅	26회 x	이상균
		박영국	박병대	김윤희

박병대 이사 :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과 규정에 따른 정관 변경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다.

김윤희 이사 : 박병대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

정두현 이사 : 김윤희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사장 : 김윤희 이사의 동의와 정두현 이사의 재청이 있은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 이에 이사장은 제3호의안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은 원안(붙임 1.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신·구조문대비표)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정두현	이사장	이세웅	박병대	김윤희
-----	-----	-----	-----	-----

## 12. 폐회

의장이 다른 기타 부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김윤희 이사의 폐회 동의와 정두현 이사의 재청이 있은 후 폐회를 선언하다. 이어서 박영국 이사가 폐회기도를 마치니 동일 오후 2시 50분이 되다.

2022년 6월 28일

이사장 이상균  
이상균

이사 김윤희  
김윤희

이사 박병대  
박병대

이사 박영국  
박영국

이사 이세웅  
이세웅

이사 이철구  
이철구

이사 정두현  
정두현

감사 김학신  
김학신

(가나다 순)

# 불임 1.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9조(회계의 구분) ①~③ &lt;현행과 같음&gt;          ④ &lt;현행과 같음&gt;</p> <p>1. &lt;현행과 같음&gt;</p> <p>2. 중등교육기관 : 학교운영위원회의 <u>자문을</u>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p>	<p>제9조(회계의 구분) ①~③ &lt;현행과 같음&gt;          ④ &lt;현행과 같음&gt;</p> <p>1. &lt;현행과 같음&gt;</p> <p>2. 중등교육기관 : 학교운영위원회의 <u>심의를</u>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및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반영</li> </ul>
<p>제7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u>제2항에서</u>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u>자문</u>한다.</p> <p>1~7 &lt;현행과 같음&gt;</p> <p>8.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u>자문을</u> 요청한 사항</p> <p>② &lt;현행과 같음&gt;</p> <p>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u>자문</u>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u>자문할</u>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7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u>심의</u>한다.</p> <p>1~7 &lt;현행과 같음&gt;</p> <p>8.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u>심의</u> 요청한 사항</p> <p>② &lt;현행과 같음&gt;</p> <p>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u>심의</u>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u>심의</u>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심의 사항) 반영</li> </ul>
<p>제76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u>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u> 한다.</p>	<p>제76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 반영</li> </ul>

이서웅

- 1 -

26일 이성근

정두현 이서웅 김윤희 박영숙

이상근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80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u>자문</u>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p> <p>② 안건 <u>자문</u>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제80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u>심의</u>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p> <p>② 안건 <u>심의</u>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반영</li> </ul>
<p>제81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제73조 제1항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u>자문</u>한다.</p> <p>② &lt;현행과 같음&gt;</p> <p>③ 운영위원회에서 <u>자문</u>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1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제73조 제1항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u>심의</u>한다.</p> <p>② &lt;현행과 같음&gt;</p> <p>③ 운영위원회에서 <u>심의</u>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건의사항 처리) 반영</li> </ul>
<p>제82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u>자문</u>한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p>	<p>제82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u>심의</u>한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안의 제출·발의) 반영</li> </ul>
<p>제82조의2(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u>자문과</u>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제82조의2(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u>심의와</u>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82조의5(회의록 작성 등) ① &lt;현행과 같음&gt;</p> <p>② &lt;현행과 같음&gt;</p> <p>1. &lt;현행과 같음&gt;</p> <p>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b>자문</b>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82조의5(회의록 작성 등) ① &lt;현행과 같음&gt;</p> <p>② &lt;현행과 같음&gt;</p> <p>1. &lt;현행과 같음&gt;</p> <p>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b>심의</b>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반영</li> </ul>
<p>제82조의6(<b>자문</b>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b>자문</b>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b>자문을</b>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b>제2항</b> 및 정관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b>자문을</b>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p> <p>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b>자문을</b>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자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2조의6(<b>심의</b>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b>심의</b>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b>심의를</b>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및 정관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b>심의를</b>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p> <p>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b>심의를</b>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자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반영</li> </ul>

이세웅

76slice

- 3 -

김윤희

이성현

정우현

이진주

박영숙

박병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2) 학교 사무조직 정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별표 2) 학교 사무조직 정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지원과-18859(2021.12.30.), '사립학교 사무지원 정원 기준 개정 알림'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지원과-3611(2022.03.04.), '사립학교 사무지원 학교별 세부 정원 기준 알림' 반영</li> </ul>			
총계 <b>4명</b> <b>7명</b> 33명			총계 <b>5명</b> <b>9명</b> 33명						
2급(참여)			2급(참여)						
3급(부참여)			3급(부참여)						
4급(참사)			4급(참사)						
5급(지방교육 행정사무관, 부참사)			5급(지방교육 행정사무관, 부참사)						
6급(주사)			6급(주사)						
7급(부주사)			7급(부주사)						
8급(서기)			8급(서기)						
9급(서기보)			9급(서기보)						
<b>부 칙</b>									
<b>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b>									